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2호
----------	--------

제출년월일 2024. 7.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의 김포시 거주기간 제한(180일)을 신설하여 위장전입 방지 및 김포시 계속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촘촘한 출산 지원체계 마련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 사항(다문화가정 해외출산 시 지원금 지급, 출산장려지원금 신청 안내 의무화)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문화가정의 해외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마련(안 제4조제6항제3호)
- 나. 출산축하금 신청 안내 의무화 규정 마련(안 제6조제3항)
- 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보건복지부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9조제1항)
- 라.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거주기간 제한(180일)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 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기한 변경(안 제13조제1항)
- 바. 본인부담금 지급시점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출자 지급제외 규정 마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2025년도 본예산 반영(비용추계서 별첨)
-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6. 3. ~ 6. 24.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나) 경 기 도 : 건강증진과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자보건법」 제5조의18”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로 한다.

제4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부모 모두 해외(산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
 - 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하였을 것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을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를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를 “서비스” 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지급제외) 시장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보건행정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명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팀장 직위·성명	모자보건팀장 손정원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간호주사 최보라(☎415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지원대상) ① ~ ⑤ (생 략)</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2. (생 략)</p> <p><신 설></p>	<p>제1조(목적)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 ----- ----- ----- ----- ----- -----.</p> <p>제4조(지원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입국 이후 시에 거주하며, 시에서 자녀를 출생신고하였을 것</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신청하였을 것</p>

제6조(지원신청) ①·② (생략)

<신설>

제9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략)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제6조(지원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거주, 영주 또는 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시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제10조(지원내용)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게 ----- 서비스 -----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생 략)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4조·제15조 (생 략)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 6개월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급제외) 시장은 본인부담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제16조 (현행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모자보건법

-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신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신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절차, 지원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5조의18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 분위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임신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축하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란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서비스 기준가격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2장 임신·출산축하금 지원

제3조(지원내용)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2. 출산축하금
3.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임신·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④ 재혼 후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녀들을 합산하여 정한다.

⑤ 신생아가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순서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순위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및 사망신고 등 증명서류 확인 후 지원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시에 출생신고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임신·출산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50만원
2. 출산축하금: 둘째 자녀부터 100만원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임신·출산축하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인과 지원대상아동의 주소를 확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접수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9조(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시에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지원내용)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에 지원한다.
2. 본인부담금: 제9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12조(지원대상 여부확인 등) ① 시장은 신청서가 확인되면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확인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원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제13조(본인부담금 신청·지원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한 후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5조(지원의 중단)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비용 발생 요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90%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규모 : 1,574명/ 3년 평균 서비스 이용자 수

- 김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평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1,331	1,703	1,689	1,574
김포시 출생아	3,442	3,282	2,867	3,197
서비스 이용률	38.7	51.9	58.9	49.8

(자료출처 : 김포시 출생아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원단가 : 498,000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553,000원의 90%

- 2024년 단가 기준 본인부담금(표준형) 현황 (단위 : 원)

구 분 (표준서비스 기간)	통합형	라형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산 식*	합 계 (천단위 반올림)
첫째아 (10일)	427,000	647,000	$\{(427,000 \times 0.8) + (647,000 \times 0.2)\} \times 0.6$	553,000
둘째아 (15일)	620,000	928,000	$\{(620,000 \times 0.8) + (928,000 \times 0.2)\} \times 0.3$	
셋째아 (15일)	599,000	888,000	$\{(599,000 \times 0.8) + (888,000 \times 0.2)\} \times 0.1$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2023년 이용자 기준 유형별 바우처 비율 적용 - 통합형 : 라형 = 8 : 2, 첫째 : 둘째 : 셋째 = 6 : 3 : 1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783,852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과 협의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과장 구영미 팀장 손정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783,852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783,852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재원 조달	783,852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지방세수입	783,852	783,852	783,852	783,852	3,919,26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1. 다문화가정의 해외 출산 시 지원금 지급

[문제점]

□ 다문화가정이 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지원금 부지급

- 출산지원금은 통상 ‘부 또는 모’ 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
- 다문화가정은 산모의 출산 편의 등을 위해 산모의 모국(해외)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외에서 출산할 시 지원금이 부지급되는 사례 발생
 - 다문화가정이 출산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왔고, 산모의 모국에서 출산한 이후 귀국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 ▶ 부모 모두 출국한 경우 ‘출산일 전후 해외 체류기간’ 에 대해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부지급하는 문제 발생

[개선방안]

-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다문화가정이 산모의 모국으로 부모 모두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귀국하여 거주하면서 출생신고를 하고, 지원금 신청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 지급하도록 개선
 - ‘국외 출산을 위한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있었다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

2. 출산지원금 안내 의무 규정 신설

[문제점]

□ 출산지원금 신청안내 미흡으로, 지원금이 부지급되는 문제 발생

- 아동·양육수당은 법령상 지급대상·절차 등에 대한 안내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출산지원금은 조례상 안내 의무 없는 지자체가 다수
 - ※ 출산지원금의 신청기한이 있는 지자체(161개) 중 지원금 신청에 관한 안내 의무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곳은 약 58%(93개) (권익위 실태조사, ‘22년 4월)
- 행정관청에서 출산지원금 신청에 대한 사전 안내 의무가 없을 시, 안내 미흡으로 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및 부지급되는 사례 발생
 - 조례에 지원금 안내 의무 규정이 없는 곳은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라는 의무만을 부여
 - 이 경우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자의 잘못으로 보아 부지급 ※ 지자체는 통상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출생일(또는 출생신고일)로부터 1개월~12개월 이내로 두고 있음(권익위 실태조사, ‘22년 4월)

[개선방안]

- 조례에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 의무 규정 신설
 - 지자체는 출생신고 접수(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안내

타 지방자치단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현황

□ 경기도 시군별 지원 현황

연번	시군	사업연도	대 상	내 용	예산분담률
1	부천시	'19.1.~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단축·표준·연장형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시비 100%
2	이천시	'21.9.~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6개월 이상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배우자 대한민국 국적자(결혼이민자)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	시비 100%
3	안성시	'22.4.~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	시비 100%
4	광주시	'23.1.~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본인부담금의 70% 지원(24년부터 확대)	시비 100%
5	파주시	'24.1.~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	시비 100%
6	과천시	'24.1.~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 신청일까지 거주기간 6개월 충족시 지원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연장형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	시비 100%
7	의왕시	'24.1.~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출생아 시에 출생등록) *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 지난날부터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의 90%를 50만원 한도내 지원	시비 100%

□ 서울·인천지역 지원 현황

시군구	사업연도	대 상	내 용	예산분담률
서울시	'23.7.~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서울시 출생 신고한 산모 (부부 모두 외국인 제외) * 24.1.1.기준 서울시 6개월 거주 폐지	-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카드 포인트 지원)	시비 50% 구비 50%
		○ 서울형 산모·신생아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 비혼모	- 단축·표준형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시비 100%
서초구 외 7개구	'19.1.~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자치구 6개월~1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또는 위 대상자 중 셋째아 이상, 저소득·취약계층* ※ 지자체별 상이, 동작구, 서초구, 중랑구는 위 조건 + 자치구에 출생 신고한 산모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지원	구비 100%
인천시	'19.7.~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단태아(첫째, 둘째) 및 쌍태아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저소득층, 취약계층*	- 자체 본인부담금 단가표 - 셋째아·삼태아 단축 전액, 표준형 90%, 연장형은 표준기준	시비 100%

* 저소득·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질환자 산모, 한부모 산모, 미혼모

□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 현황

시군구	사업연도	대 상	내 용	신청
은평구	'23.1.~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	- (본인부담금-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 × 90%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동대문구	'19.8.~	-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저소득, 취약계층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지원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도봉구	'19.1.~	- 서비스 종료일까지 도봉구 6개월 이상 연속거주한 산모 :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산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최대 35만원)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작구	'19.1.~	-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아 동작구 출생등록) *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시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지원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2개월 이내
종로구	'20.6.~	- 출산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첫째·둘째아 출산가정 · 쌍생아 이상,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산모 ·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 저소득, 취약계층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최대 100만원)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1개월 이내
광진구	'21.6.~	-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산모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 단축·표준형 지원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중랑구	'19.1.~	- 중랑구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거주 1년 이상 산모 또는 배우자 (출생아 중랑구 출생등록) *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시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 단축·표준형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서초구	'21.5.~	-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시 지원	- 본인부담금의 90%에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제외한 금액 * 단축·표준형 지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3532호
----------	---------

제출년월일 2024. 10. 04.
제출자 정영혜 의원

1. 수정이유

- 안 제4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 또한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조문의 체계를 적합하게 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1호와 제2호를 하나의 호로 병합함.
- 아울러, “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일 기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거주기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규정의 의미가 제출안의 조문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불명확하여 조문을 수정함.
- 신설되는 안 제4조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한 ‘해외 출산 다문화가족 대상 출산축하금 지원’ 조문에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것으로 대상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 수정함.
- 신설되는 안 제14조(지급제외)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중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한 지급제외를 규정하고 있어 제3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개정형식을 갖추어야 하나 제출안에는 해당 형식이 누락 되어 이를 보완함.

2. 주요수정내용

가. 지원대상 (안 제4조)

나. 지급제외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시에 출생신고”를 “조선 등 부득이한 사
정으로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생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제14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 ① ~ ⑤ (생략)</p> <p>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u>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u></p> <p>2. <u>시에 출생신고</u>를 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p> <p>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의 모국)로 부모 모두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나. (생략)</p> <p><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4조(지원대상)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 ----- -----.</p> <p><u><삭 제></u></p> <p>1. <u>조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생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나, 출생신고</u>-----</p> <p>2. -----</p> <p>가.·나. (현행과 같음)</p> <p>다. <u>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장 보칙</u></p>